

부산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가합4438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3. C

4. D 주식회사

5. 주식회사 E

6. F

7. G

8. H

9. I

10. J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16. 9. 7.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6. 5. 14.까지는 연 6%, 2016. 5. 15.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9%,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F와,

1) 피고 G, H 사이에 2016. 1.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 피고 I, J 사이에 2016. 1.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G, H은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 1. 28. 접수 제81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피고 I, J은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 1. 29. 접수 제9017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C과 피고 H 사이에,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82,271,5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나.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9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4. 피고 H은 원고에게 1,082,27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와의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7. 29. 원고와 사이에 보험금액 2,300,000,000원, 보험기간 2015. 7. 23.부터 2016. 7. 22.까지, 피보험자 포스코인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 A이 포스코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5%)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포스코에 대한 채무를 지체함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로부터의 사전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3)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F를 비롯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C,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험사고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피고 A은 2015. 6.경 이후부터 포스코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6. 3. 14.경 부도를 냈으며, 당시 피고 A의 포스코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7,898,222,875원이었다(이하 이를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2016.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3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 A, F, B, C, D, E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액 상당의 사전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4. 15. 포스코에 보험금 2,3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따라서 피고 A, B, C, D, E,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6. 5. 14.까지는 연 6%, 2016. 5. 15.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9%,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F의 사해행위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피고 F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6. 1. 28. 피고 G, H 앞으로 2016. 1. 27.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② 2016. 1. 29. 피고 I, J 앞으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12,79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제1, 2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 및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2016. 3. 14.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제1, 2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채 석 달이 지나지 않은 2016. 4. 15. 원고가 포스코에 대위변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위 사전구상금 채권 및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피고 F는 이 사건 제1, 2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보험사고 직전 피고 G, H, I, J과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 피고 F는 이 사건 제1, 2설정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피고 G, H, I, J에게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G, H, I, J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F와 피고 G, H, I, J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G, H, I, J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C의 사해행위

1) 피보전채권 가) 피고 C은 ① 2016. 2. 19.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H 앞으로 2016. 1. 28.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② 2016. 2. 19.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H 앞으로 2016. 1. 28.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 및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2016. 3. 14.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채 석 달이 지나지 않은 2016. 4. 15. 원고가 포스코에 대위변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사전구상금 채권 및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보험사고 직전 피고 H과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피고 H에게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H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원상회복의 방법 가) 원물반환의 불가능

피고 C과 피고 H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H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H이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새진해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및 9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4, 5, 6, 7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에스엔티저축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2. 19.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말소되었고, 말소 당시 에스엔티저축은행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는 위 4, 5, 6, 7항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여 1,161,864,753원에 이르고 있어서, 위 4, 5, 6, 7항 각 부동산 중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 2, 3항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182,271,500원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구상금 채권은 위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한 2,30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위 공동담보가액과 위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182,271,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H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182,27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경우

피고 H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의 거래가액인 900,000,000원이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구상금 채권은 위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한 2,30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위 공동담보가액과 위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9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H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소결론 피고 C과 피고 H 사이에, 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182,271,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9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H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082,271,500원(= 182,271,500원 +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재판장판사조민석

판사오대훈

판사정승화

별지